대법원 2023다276823 손해배상(기)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피고의 직원으로 팀장인 A가 직원인 원고를 집으로 불러 강간미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, 원고가 ① A의 불법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고, ② 피고가 A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

대법원 3부(주심 대법관 이숙연)는,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, ①, ② 부분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3다 276823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- 피고의 직원으로 팀장인 A는 2017. 7. 26.경 직원인 원고를 집으로 불러 강 간미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름
- 원고는 2019. 12.경 피고에게 위 사건 등에 관하여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, 피고는 원고 및 A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진행하면서 A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A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함
-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, ① A의 강간미수 불법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,500만원을 청구하고, ② A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담당한 피고 직원들의 위법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,500만원을 청구함

2. 소송의 경과

가. 제1심 ➡ 원고 일부 승[1,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]

- ① 부분 청구 일부 인용
 - A의 강간미수 행위는 외형적, 객관적으로 피고의 피용자인 A의 사무집 행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,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됨
 - 제1심이 인정한 정신적 손해액은 5,000만 원이나, 그중 원고가 A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,5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1,500만 원을 인정함
- ② 부분 청구 기각
 - 피고가 A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

나. 원심 ➡ 원고 일부 승[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추가 인용]

- ① 부분 청구 일부 인용
 - 제1심 판단 유지
- ② 부분 청구 일부 인용
 - 피고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고, 「남녀고 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
 - 피고는 원고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단순히 A의 사직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만 전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의 견청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
 - 그 밖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면담 및 인사상 배려등 필요한 피해회복 지원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음
 -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인정함

■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함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A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
- 피고가 A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 등이 위법한지 여 부

나. 판결 결과

■ 피고 상고기각(원심 수긍)

다. 판단 내용

- ②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,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징계 사직 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의견 청취의무 이행,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, 이유모순,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
- ①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,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, 이유모순, 면책사유에 대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
- ① 부분 청구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최종적으로 1,500만 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, 사용자책임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